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6명(4급 1명, 5급 3명, 6급 2명)은 감축하고, 5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2명, 6급 2명)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대·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 1명(5급 1명)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9. 00. 공포, 2022. 10. 1. 시행)됨에 따라,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3항에 제11호에서 제16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·운용

12. 지주회사 설립·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

13.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·운용

14. 지주회사 관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의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
15. 지주회사 관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면탈행위의 조사·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

16.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

제9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삭제한다.

별표 2 총계 “491”을 “48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8”을 “482”로 하며, 서기관 “31”을 “30”으로 하고, 행정사무관 “160”을 “157”로, 행정주사 “123”을 “121”로 한다.

별표 2의2 총계 “491”을 “48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88”을 “482”로 하며, 서기관 “31”을 “30”으로 하고, 행정사무관 “167”을 “164”로, 행정주

사 “116”을 “114”로 한다.

별표 4를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기업집단국) ①② (생략)	제9조의2(기업집단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.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 · 운용
	12. 지주회사 설립 · 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
	13.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 · 운용
	14. 지주회사 관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의 조사 · 시정조치 ·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
	15. 지주회사 관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면탈행위의 조사 · 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
	16.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
④ 지주회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<u><삭 제></u>
1.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 · 운용	

<u>2. 지주회사 설립·전환 및 제 외 신고에 대한 심사</u> <u>3.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 사기준 등의 설정·운용</u> <u>4. 지주회사 관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의 조사·시정조치 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</u> <u>5. 지주회사 관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면탈행위의 조사·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</u> <u>6.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</u> <u>7.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 행위 중 지주회사 관련 사건 의 조사·시정조치·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</u>	
<u>제19조(평가대상 조직)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 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.</u>	<u><삭 제></u>
<u>제20조(한시정원) 대·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</u>	<u><삭 제></u>

2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
따른 한시정원을 공정거래위
원회에 두며, 별표 6의 정원 1
명(행정사무관 1명)은 중소벤처
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
원해야 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[별표 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491</u>	<u>485</u>	-6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488</u>	<u>482</u>	-6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	<u>31</u>	<u>30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160</u>	<u>157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123</u>	<u>121</u>	-2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2의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491</u>	<u>485</u>	-6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488</u>	<u>482</u>	-6
•	•	•	
•	•	•	
서기관	<u>31</u>	<u>30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	<u>167</u>	<u>164</u>	-3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주사	<u>116</u>	<u>114</u>	-2
•	•	•	
•	•	•	